

문서번호 영동군의회 2020-3

시행일자 2020. 3. 2.

수 신 영동군의회 의장

(경유)

제 목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동군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- 붙 임 1.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
2. 발의자 명부 1부. 끝.

발의자 : 의원 이 수 동 (인) 외 7인

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발 의 자	이수동의원 외 7
발의년월일	2020. 3. 2.

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20. 3. 2.

발 의 자 : 이수동, 윤석진, 정진규, 김용래,
이승주, 이대호, 남기학, 정은교

1. 제안이유

- 영동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,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-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심의위원회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연구단체 지원 및 공동참여 등(안 제9조, 제10조)
- 연구 활동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(안 제11조, 제12조)
-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(안 제13조)
- 연구단체 해산 및 연구단체 등록부(안 제14조, 제15조)

붙임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. 끝.

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에 따라 영동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, 의정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(이하 "연구단체"라 한다)란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영동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.
2. 연구단체 활동비란 연구단체가 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.
3.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영동군의회 의원(이하 "의원"이라 한다)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.

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4조(등록 등)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

작성하여 영동군의회 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5조(등록취소)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
2.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

제6조(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)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이 위원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영동군의회 부의장이 되고,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.
-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전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되며,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
2.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

4.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연구단체 지원)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로 지원하는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1.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경비

2. 여론수렴, 조사연구 등을 위한 소규모 정책연구 용역비

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.

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.

제10조(공동참여 등)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.

제11조(연구 활동계획서 제출)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

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.

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연구 활동계획서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고,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2조(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)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수 있다.

제13조(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)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영동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4조(연구단체 해산)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 된다.

제15조(연구단체 등록부) 의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

「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.

1. 단체명칭 :
2. 설립목적 :
3. 단체 인적사항

성명	생년월일	서명	비고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

(인)

영동군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

의원 연구 활동계획서

「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의원연구단체명			
연구 내용		주 제	
		목 적	
연구 활동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
연구 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(별첨)	
연구단체 활동비	총 액	금 원(금 원)	
	산출내역		
정책연구 용역비	총 액	금 원(금 원)	
	용역목적		
	주요내용		
특이 사항	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

(인)

영동군의회회장 귀하

[별지 제3호서식]

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신고서

「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.

의원연구단체명		
변 동 의 원	당 초	의원
	변 경	의원
변 동 일 자	년 월 일	
변 동 사 유		
기 타		

년 월 일

신 청 인 대 표 자 : (인)

영동군의회 의장 귀하

[별지 제4호서식]

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

「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	
연구주제 변경 내용	당 초	연구주제	
		연구목적	
	변 경	연구주제	
		연구목적	
연구활동계획 변경 사유			
연구방법 및 세부연구계획			
연구단체 활동비	총 액	금 원(금 원)	
	산출내역		
정책연구 용역비	총 액	금 원(금 원)	
	용역목적		
	주요내용		
특기사항			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

(서명 또는 인)

영동군의회의회장 귀하

[별지 제5호서식]

연구 활동 결과보고서

「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〇〇년도 〇〇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의원연구단체명					
연구내용	연구주제				
	연구목적				
연구 활동	집행내역	자료수집 및 조사비	금	원(금	원)
		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	금	원(금	원)
		전문가 활동 경비	금	원(금	원)
		기 타	금	원(금	원)
정책연구 용역	용역목적				
	주요내용				

- 붙임 1. 00년도 000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1부.
2. 연구단체 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.
3. 연구용역 보고서 1부.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자 : (인)

영동군의회의회장 귀하

[별지 제6호서식]

연구 활동 심의결과 통보서

「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 연구단체의 ○○년도 ○○연구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·의결 결과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
대 표 자		
연 구 주 제		
심의·의결 결과	내 용	
	결 과	

년 월 일

제 출 자 :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

(인)

영동군의회의장 귀하

[별지 제7호서식]

연구단체 등록부

[illegible]

발의자 명부

직 책	성 명	서명또는날인	비 고
의 원	이 수 동		
의 원	윤 석 진		
의 원	정 진 규		
의 원	김 용 래		
의 원	이 승 주		
의 원	이 대 호		
의 원	남 기 학		
의 원	정 은 교		